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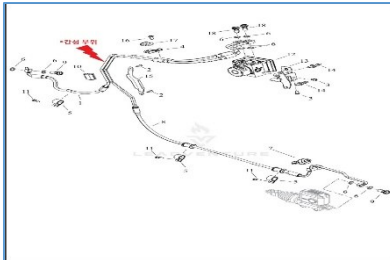


고객통지문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유)기흥모터스는 한국에 수입·판매된 모터사이클 제품(2025~2026 년식 Softail 일부 모델)에서 바디 컨트롤 모듈(BCM)과 리어 브레이크 라인 사이의 간격 부족에 따른 간섭 및 마모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접촉 발생 시 리어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되어 브레이크액이 누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뒷바퀴 제동 성능 저하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차명	HARLEY-DAVIDSON 소프트테일 중 4 개 모델
나.	형식	FLHC, FXBB, FXLRS, FXLRST
다.	제작년월일	2024.12.19 ~ 2025.10.24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BCM 브라켓 및 리어 브레이크 라인 ※ BCM 브라켓 설명: 차량의 각종 전기 장치를 제어하는 바디 컨트롤 모듈(BCM)을 차체 프레임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하는 거치대 ※ 브레이크 라인 설명: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ABS 모듈 및 캘리퍼로 전달하여 모터사이클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액이 흐르는 관
마.	사진 또는 이미지	 
바.	결함원인	BCM과 리어 브레이크 라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상호 간섭 및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가.	시정조치기간	2026 년 5 월 26 일부터 완료일까지 실시합니다.
나.	시정조치방법	개선된 BCM 브라켓으로 교체하여 간격을 확보하고, 리어 브레이크 라인을 정밀 점검하여 마모 또는 손상 확인 시 신품으로 교환
다.	시정조치 작업시간	약 1 시간 내외 소요
라.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용인 A/S 센터: 031-307-805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05-12 하남 A/S 센터: 031-8028-1181,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232 일산 A/S 센터: 031-815-84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5-4 대구 A/S 센터: 053-214-8387,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42-3 부산 A/S 센터: 051-752-82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582 창원 A/S 센터: 055-3434-827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29-1 천안 A/S 센터: 041-555-827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762 남양주 A/S 센터: 031-510-633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83 인천 A/S 센터: 032-235-850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1 번길 10 담당부서: (유)기흥모터스 서비스팀
마.	시정조치 비용	부품과 공임 비용은 전액 (유)기흥모터스에서 부담합니다.

바.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지속적인 마찰로 인한 리어 브레이크 라인 손상 시 브레이크액이 누출되어 뒷바퀴 제동 성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	---

3.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 에 따라, 시정조치 전/후에 고객이 본 시정조치와 동일한 현상으로 수리비용을 유상으로 부담하였을 경우, 수리에 대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유상처리 금액을 보상할 예정임
나.	보상기간	2025 년 5 월 26 일부터 자비로 시정한 금액을 보상 예정
다.	보상신청 접수장소	(유)기흥모터스 서비스팀
라.	보상신청 연락처	용인 A/S 센터: 031-307-8053

4. 추가 안내사항

가.	(유)기흥모터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나.	용인 A/S 센터: 031-307-8053 (서비스센터 안내 및 문의사항 문의처)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대상 자동차를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리콜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